

부산관광공사 공고 제2020-153호

『2020 부산 관광업계 사업지원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연장공고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코로나19 관광업계 조기회복을 위해 『2020 부산 관광업계 사업지원 프로젝트』 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02일

부산광역시 - 부산관광공사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부산 소재 **관광사업체(2019년 매출액 4억원 초과 업체)**
* 정부 '새희망자금' 수혜 소상공인(연 매출액 4억 이하 업체) 중복지원 제외
- 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소기업 관광업체 대상 선정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결정, 사업비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업체당 200만원 한도
* 상반기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선정업체가 재선정 될 경우는 100만원 한도내 지원
- 추진절차

공 고	- 부산시 소재 관광업체 대상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
신청서 접수	- 접수 (11월중) ※ 방문·우편 접수 불가 cho88@bto.or.kr 또는 팩스접수(051-780-4108)
심 사	- 선정위원회 구성 평가 (11월중)
선정업체 발표	- 시 및 관광협회, 관광공사 홈페이지 (11월중)
지원금 신청, 지급	- 지원금 신청, 지급 (11월 이내)

2. 신청조건

지원기준

업종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제2조*에 근거·등록된 부산소재 관광사업체(2019년 매출액 4억 초과 업체)
규모	중기법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 소기업 : 평균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력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관광업 운영 업체 * 관광사업등록증 상 2019. 10. 17(일자포함) 이전 등록 업체
매출	2020년 2분기(4~6월) 월 평균 매출액이 2019년(연간) 월 평균 매출액 대비 30%이상 감소 한 경우 * 2019년 월 평균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액을 기준으로 함 * 2020년 4월~6월 매출액은 업체의 매출장부(세금계산서 집행내역, 카드 내역 포함) 또는 '20년 2/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확인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 11. 2(월) ~ '20. 11. 13(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부산관광공사 담당자 이메일 접수(cho88@bto.or.kr)
또는 팩스접수(051-780-4108) ※서류 발송 후 유선연락 요망
- 접수문의 : 부산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팀
051-780-4123 (조경식 매니저)

제출서류(신청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참가신청서 ②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사업계획서 - 기본사항 -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⑤ 사업자등록증 	1~4번 서류 공고 붙임2. 신청서류 양식 활용 ★제출 시 서명 또는 날인필수
---	--

⑥ 관광사업등록증(택1)	① 관광사업등록증 ※ 관광사업등록증 상 날짜가 2019. 10. 17. (일자포함) 이전인 경우 ②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 1년 이상 운영하였으나 사업자 이전 등의 사유로 관광사업등록증 상 날짜가 2019. 10. 17. 부터	택 1
⑦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증빙(택1)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19년(연간)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발급 ②원천징수신고확인서 2020년 2/4분기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발급 ③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택 1
⑧ 매출액 증빙자료	(법인사업자) 2019년(연간), 2020년 2/4분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개인사업자) 2019년(연간), 202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2020년 4 ~ 6월 월별 매출장부 ※ 부가세 신고 자료가 없을 시 세무 대리인 확인필수	

※ 부정제출 및 수급 시 환수조치와 향후 부산시 관광사업 참여 배제

지원규모

○ 업체 수 : 150여개 업체

○ 지원금액 : 업체당 200만원 한도

* 상반기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선정업체가 재선정 될 경우는 100만원 한도내 지원

선정발표 : '20. 11월 중순 예정,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

- 사업비 신청 시 : 통장사본 - 사업비 집행 후 : 지원금신청서(붙임3 양식)에 지출 증빙자료 첨부 및 제출

※ 선정업체 발표 시, 별도 안내

지원금 지급 : '20. 11월 이내

3. 심사 및 선정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선정기준

○ 1차 정량 평가(매출액 감소비율)

- 금년 2분기(4~6월)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50%이상 감소한 업체 중 감소비율이 높은 업체 순

- 최종 선정업체 수(150개)의 130%이내 선정

○ 2차 정성 평가(사업계획서 심사)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창의성	당해 기업의 상황 인식과 사업의 필요성	30점
	사업 계획의 창의성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의 구성성 및 타당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40점
부산관광 기여도	관광산업의 자생력 제고 기여도	30점
	부산관광 질적 향상 기여도	

○ 제외대상

- 신청자격 미달 업체(중기업 이상, 1년 미만 운영업체 등)는 제외

- 관광진흥법에 의한 행정처분*(사업정지 10일 이상)을 받은 업체

* 행정처분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포함, 처분기간은 '19. 1. 1.~ '20. 10.(공고일)

- 폐업중인 업체는 지원자격 제외

최종 선정 : 150여개 업체

4. 지원사항

□ 지원개요

○ 지원금액 : 업체당 200만원(한도)

- 상반기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선정업체가 재선정 될 경우는 100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내용

- 관광수요 회복 대비 신규 관광수요 맞춤형 상품 기획·개발 비용

▶ (예시) 인쇄비, 전문가 활용비, 외주개발비, 컨설팅비 등

- 온라인 콘텐츠 고도화 개발·제작 비용

▶ (예시) 콘텐츠 제작비, 전문가 활용비, 외주개발비 등

- 예약시스템 및 플랫폼 서비스 정비, 홈페이지 개선 등 기반 재조성 비용

▶ (예시) 홈페이지 개발비, 시스템 개선비, 외주개발비 등

- 기타 전략적 홍보·마케팅 비용 등

▶ (예시) SNS 홍보비, 광고비, 외주 마케팅비, 브로셔 제작비, 인쇄비 등

○ 지원방식

- 선정업체 사업비 지원, 집행 후, 지출 증빙자료 별도 제출

- 시설비, 상근 인건비, 임대료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은 지원 불가

<사용 불가 항목 >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선발 업체의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집기 구입,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끝.